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3-30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7구합16806 주민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[redacted] 유한회사

피 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14. 9. 12.

판 결 선 고 2015. 1. 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37,252,000원의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1/6은 피고가,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06. 3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218,378,900원의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3-30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01. 3. 10.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른 자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.

나. 원고는 2006. 2. 1. [redacted]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372,520,140원을 부과 받고, 그와 별도로 원천징수 법인세 1,811,269,040원을 부과 받아(합계 2,183,789,180원)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.

다. 원고는 2006. 3. 28. 피고에게,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, 소득할 주민세 37,252,000원 및 특별징수 소득할 주민세 181,126,900원 합계 218,378,900원의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고, 피고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.

나. 관계 법령

주민세법(2010. 1. 1.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172조(정의)
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2. "소득할"이라 함은 소득세할·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3-30

4. "법인세할"이라 함은 「법인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5. "농업소득세할"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6. "사무소 또는 사업소"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7. "사업장"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(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176조(세율)

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세율
법인세할	법인세액의 100분의 10

다. 판 단

1)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원고가 [redacted]세무서장을 상대로,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972)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9. 11. 1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(서울고등법원 2009누40034)에 따른 항소심 법원도 2011. 5. 12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,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(대법원 2011두12917)하였고, 대법원은 2013. 9. 26. [redacted]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(별지에 기재된 372,520,140원 부분)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실, 이에 따른 파기환송심(서울고등법원 2013누28659)에서 [redacted]세무서장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된 법인세 부분을 환급할 것이라고 진술하고, 원고 또한 그 세액을 환급 받으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사실,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. 2. 10.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액 중 372,520,152원을 직권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3-30

로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2) 주민세법(2010. 1. 1.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5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[redacted]세무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2,183,789,192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대법원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중 372,520,140원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에 따라 해당 부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면,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취소된 법인세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인 37,252,000원(= 직권으로 취소된 법인세 372,520,152원×10/100, 100원 미만 버림)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 그런데, 피고가 2014. 3. 21.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어야 할 37,252,000원에 관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[1]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37,252,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)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.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진행 결과, 제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,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법하다고 판단된 372,520,14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(1,811,269,040원)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사정이 이와 같다면, 위와 같이 적법하게 부과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법인세할 주민세 181,126,900원(= 위 1,811,269,040원×10/100, 100원 미만 버림. 이는 이 사건 처분 금

1) 피고는 2014. 11. 26.자 참고서면을 통해 자신이 2014. 11. 17. 특별징수분주민세 3,547,280원도 부과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나, 피고가 2014. 11. 17. 부과취소한 위 특별징수분주민세는 그 과세번호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번호와 일치하지 않아 취소대상이 된 주민세가 아닌 별도의 주민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로 보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3-30

액 218,378,900원 중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37,252,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한다)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) 소송비용과 관련하여, 이 사건 소 중 각하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게 된 사정에 연유한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소송비용(약 6분의 1 부분)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다.

3. 결 론

이 사건 소 중 37,252,000원의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승택

판사 하정훈

판사 김태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3-30

별지

세목	과세기간	세액
법인세	2001. 3. 10.~2001. 6. 30. 사업연도	86,106,370원
	2002. 4. 1.~2002. 6. 30. 사업연도	252,306,200원
	2002. 10. 1.~2002. 12. 31. 사업연도	29,299,330원
	2003. 1. 1.~2003. 3. 31. 사업연도	4,808,240원
	합계	**372,520,140원**